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

##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7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이 2023. 3. 28.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부터 제3조, 별표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 결과: 의견없음
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”을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  
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“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34조제1항”을 “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  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
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	법 제34조제1항	1,000	2,000	3,000
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부과·징수 한다.</p> <p>제3조(부과대상 및 기준)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[별표]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-----</p> <p>----- 제34조제3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부과대상 및 기준) -----</p> <p>--- 제1항 및 제2항-----</p> <p>-----</p> <p>[별표]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</p> <p>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반 사 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령</th> <th colspan="3">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</td> <td>법 제34조 1항 1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</td> <td>법 제34조 1항 2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div>	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법 제34조 1항 1호	100	200	300	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34조 1항 2호	100	200	300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</p> <p>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</p> <p>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반 사 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령</th> <th colspan="3">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</td> <td>법 제34조제1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</td> <td>법 제34조제2항 제1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사람</td> <td>법 제34조제2항 제2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div>	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	법 제34조제1항	1,000	2,000	3,000	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 제1호	100	200	300	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 제2호	100	200	300
위 반 사 항		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법 제34조 1항 1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34조 1항 2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	법 제34조제1항	1,000	2,000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 제1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사람	법 제34조제2항 제2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
·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약과 의료지원팀 조세영
연 락 처	2627 - 2430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** 과태료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부과·징수 한다.

**제3조(부과대상 및 기준)**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 절차)**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부칙(제883호, 2016.10.14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지역보건법

**제34조(과태료)**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